

[중국특허침해소송] 중국 특허침해소송에 등장한 새로운 개념 “**三審合一**”



JETRO 북경사무소 지식재산권부에서 2017년 1월 발표한 “중국지재권침해 관련 재판 매뉴얼”에는 아래와 같은 **三審合一**이라는 매우 생소한 개념에 대한 설명부분이 있습니다. 참고로 인용합니다.

그 요지는 지재권침해분쟁에 관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민사, 형사, 행정사건을 한곳에서 집중하여 심판한다는 것입니다. 물론 현재는 소위 **三審分立** 원칙에 따라 각 사건은 별개의 독립기관, 법원, 재판절차를 적용합니다. 이것을 수정하여 집중 처리하려는 논의가 있다는 것입니다. 현실화될지 여부를 떠나 흥미로운 내용이라서 참고로 소개합니다.

「三審合一」とは、知的財産権民事、刑事、行政事件を統一して集中的に審理するという審判体制である。知的財産権裁判の「三合一」とは、人民法院の知的財産権裁判廷が統一的に知的財産権民事、刑事と行政事件を審理することをいう。「三審合一」に相對して、人民法院が長期間に実行していた「三審分立」の裁判機制である。かつて同一事件について、刑事部分の判決がすでに言い渡されたが、その民事部分が權利侵害に該当しない現象が眞実に発生していた。知的財産権に係る民事、刑事と行政訴訟事件について、同一法院内の民事法廷、刑事法廷と行政法廷がそれぞれ審理しているので、裁判官の審理立場が異なるにつれて、相異なる裁判結果が生じかねない。實務によれば、知的財産権民事、刑事と行政事件の分立裁判は、現在の知的財産権に係る高効率・立体的保護のニーズに適應できず、知的財産権裁判レベルと日増しに増長する保護ニーズ需求との間では互いに適應していないことが証明されている

변리사 22년/변호사 14년 경력, 특허심판소송, 손해배상, 형사소송, 해외분쟁, One-Stop 대응

---

T. 02-591-0657 E. [kkh@kasanlaw.com](mailto:kkh@kasanlaw.com) H. [www.kasanlaw.com](http://www.kasanlaw.com)